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이상식・이건태・최민희

어기구 · 정춘생 · 서미화

민병덕 · 김문수 · 박수현
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」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·관리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,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안」(의안번호 제388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4. 「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